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90

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김문수・문정복・정성호

한준호 · 김현정 · 민형배

이광희 · 정을호 · 고민정

김준혁 · 강경숙 · 김우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및 「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」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,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.

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·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,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3(직무배제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해,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·기간·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4(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 권자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1.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
  - 2.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

- 3.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
- 4.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「국가공무 원법」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의료전문가 와 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교육공무원, 동료 교직원,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l> <li>&lt;신 설&gt;         제44조의3(직무배제)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 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. 이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    </li> <li>② 제1항에 따른 위해, 특별한사유및 분리조치의 방법・기간・장소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li> <li></li>     &lt;</ul>	현 행	개 정 안
		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공 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 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 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위해,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・기 간・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44조의4(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의 설치) ① 임용권자 또는 임 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의 휴 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 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-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.
- 1.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 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
- 2.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
- 3.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보
- 4.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 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「국 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4 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되, 의료 전문가와 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교육공무원, 동료 교 직원,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・운

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 령으로 정한다.